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가단22844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김기태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현
담당변호사 김지연
변 론 종 결 2023. 7. 5.
판 결 선 고 2023. 9. 20.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118,826,7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8,826,728원 및 위 돈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18,826,728원 및 위 돈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3. 6.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경남 함안군 D 임야 6446㎡에 관하여 2020. 6.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118,826,7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D 임야 6446㎡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 1) 원고는 C(개명 전 E)과 사이에 2012. 11. 13. 대출금 25,000,000원, 2016. 5. 26. 대출금 80,000,000원의 각 일반신용대출(가계자금)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각 돈을 대여하였다.
- 2)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각 대여금을 청구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0차전39827), 2020. 9. 22.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00,626,507원 및 위 돈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9. 3.부터 2020. 10. 19.까지 연 6.07%의,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9. 3.부터 2020. 10. 19.까지 연 5.54%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20. 11. 3.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라고 한다).
- 3) 2022. 3. 25.을 기준으로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은 채무원리금 합계 118,826,728원이다.

나. 처분행위

- 1) C과 피고는 1998. 7. 9. 혼인신고를 하였다.
- 2) C과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2020. 6.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산분할 협의를

하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고 한다), C이 피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① C은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한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② 대신 피고는 C에게 50,000,000원을 주기로 한다.

③ 울산 중구 F아파트, G호와 울산 울주군 H(이하 ‘피고 명의 부동산’)은 당초 피고의 제과점 운영으로 번 수익으로 취득하여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한다.

3) C은 2020. 6. 26. 울산가정법원에서 피고와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였고, 2020. 7. 20.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가 위 협의에 따라 C에게 지급하여야 할 5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C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로 상계하고, 나머지 40,000,000원은 피고가 추후 C의 벌금, 변호인 선임비용을 대납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4) C과 피고는 2020. 8. 10. 협의이혼하였다.

5) 피고는 2020. 1. 6.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울산 중구 F아파트, G호에 관하여 I조합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12. 근저당권설정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C의 무자력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J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피보전채권을 포함하여 165,000,000원 가량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등 참조).

2)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K의 감정평가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 협의일인 2020. 6. 18.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의 합계는 374,065,288원이었던 사실, 한편 피고가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피고 명의 부동산인 울산 중구 F아파트, G호의 가액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약 340,000,000원, 울산 울주군 H 토지의 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약 66,997,8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혼으로 인한 이 사건 재산분할로 C의 소유였던 시가 374,065,288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원고에게는 그 대가로 50,000,000원만 지급하였는데, 여기에다가 별지 목록 기재 제3, 4항 기재 부동산은 2013. 7. 30. C이 상속받은 재산인 점, 피고는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피고 명의 부동산은 피고의 수입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하면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고 피고가 그대로 소유하기로 한 점, 피고 스스로 C이 원고에게 부담한 채무는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은 피고가 주장하는 이혼의 경위 및 기여도, 위와 같은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하고 분할 내용을 정하게 된 경위 등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C과 피고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의 1/2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피고가 그 대가로 지급한 50,000,000원을 제외한 약 137,032,644원 부분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재산분할이라고 판단된다.

다. 사해의사

이 사건 재산분할로 C은 자신의 소유한 부동산 전체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는바, C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이 사건 재산분할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리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이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취소의 범위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을 통하여 적정한 재산분할 액수보다 약 137,032,644원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앞서 본 재산분할의 경위와 그 내용, 피고가 지급한 대가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은 C이 소유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체 가액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중 피고의 적정한 재산분할 부분이 존재하므로,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복수이고 그 일부에 관한 처분행위만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재산분할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한편, 이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 및 반환의 범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피고의 이익액 중 가장 적은 액수를 한도로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앞서 본 공동담보가액이나 피고의 이익액보다 적은 118,826,728원을 한도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으로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18,826,728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18,826,728원 및 그 중 원고가 구하는 100,000,000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가액배상액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3. 6.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나경

별지

목 록

1. 경상남도 함안군 □ 518.5㎡2. 경상남도 함안군 □□□□동호[도로명주소]경상남도 함안군

벽돌구조 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72.64㎡

부속건물

벽돌구조 슬라브지붕 단층 화장실 2.2㎡

벽돌구조 스테이트지붕 단층광고 58.95㎡

돌담구조 스테이트지붕 단층광고 44.1㎡

3. 경상남도 함안군 임야 2678㎡4. 경상남도 함안군 임야 6446㎡

